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60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김미애 · 이종배 · 곽규택
최수진 · 김기현 · 이달희
김상훈 · 김재섭 · 김 건
유용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관광 분야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9(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발급되며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요건, 절차 및 혜택 내용과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7조의9(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u> <u>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발급되며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u> <u>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 할인 혜택</u> <u>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u> <u>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u>

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
민증의 발급요건, 절차 및 혜택
내용과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
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